

2016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참가자 모집 안내



I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주거, 결혼, 교육, 창업자금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2.5만원	5만원	7.5만원	
총 적립금(2년)	180만원+이자	36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3년)	27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810만원+이자	

II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자격은?

- ▶ 다음 1~3 또는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공고일(2016. 3. 25)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만34세 이하(1982. 3. 25 ~ 1998. 3. 25 출생)
 2. 공고일(2016. 3. 25) 기준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200만원 이하 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 공고일(2016. 3. 25)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4. 공고일(2016. 3. 25)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 ▶ 2016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구규모별 소득인정액 신청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충족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80%	1,299,865	2,213,282	2,863,215	3,513,147	4,163,079	4,813,012

※ 형제·자매, 자녀는 가구원수에는 포함하되 소득은 미반영

*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사업소득등록증 소지자 또는 사업소득수입증명사실 확인가능자)

*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자 본인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단, 법원의 파산면책 결정자,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 기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통장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가구(졸업가구와 중도해지가구 포함), 보건복지부 추진 유사 자산형성 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 I·II, 내일키움통장 등) 참여가구
(※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디딤씨앗통장(CDA)'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

III 『희망두배 청년통장』신청방법은?

- ▶ 모집인원 : 총 500명(자치구별 모집인원 배정)
- ▶ 신청기간 : 2016. 3. 25(금) ~ 4. 14(목)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9~18시)
-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
-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①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② 주민등록등본 1부 : 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③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부모 배우자 정보 작성)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 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지참 ※ 동일가구원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⑥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또는 고용·임금확인서(별도서식) 등

⑦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사본) 추가 제출, 개인회생 중인 자는 개인회생결정문(사본)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법원 발급),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는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신용회복위원회) 제출

※ 필요시, 임대차계약서, 자동차 보험증서(해당자)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징구 가능

- ▶ 선발일정 : 면접심사 2016. 6. 11(토) ~ 6. 13(월) ※ 선발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 ▶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6년 6월말에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 기타 문의사항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국번없이),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

2016. 3. 25.